

의 견 서

사 건 2016헌마738

청 구 인 권 가 현 외 2

위 사건에 관하여 청구인들의 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다 음

I.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견 요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라 합니다)는 아래와 같이 청구인들의 주장이 모두 이유 없어 이 사건 청구가 각하 또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 적법요건의 흠풀

방통위는 청구인들이 모두 자기관련성 요건을 흠풀하였고, 청구인 2와 3의 경우 자기관련성 요건과 현재성 요건을 흠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2.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음

가. 청소년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하지 않음

방통위는 이동통신 사업자가 차단수단을 통해 청소년이 스마트폰으로 어떤 정보를 검색하고 접근하는지 확인할 수 없고, 법정대리인에게 '차단수단의 작동 여부에 관한 정보'는 사생활에 관련된 정보가 아니어서 청소년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별도로 그 침해 여부를 판단할 실익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나. 청소년과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지 않음

방통위는 이동통신 사업자가 스마트폰 이용계약 체결시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이 사건 차단수단 설치의무 조항과 관련 없으며, 이동통신사나 앱 개발사가 개인정보를 수집·보관하거나 활용하지 않으므로 청소년과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다. 청소년의 알 권리제한하지 않음

방통위는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불법정보는 청소년의 알 권리의 보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알 권리의 제한은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 또는 불법정보 유통금지제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 사건 차단수단 설치의무 조항과 상관없다고 주장합니다.

라. 부모의 교육권을 제한하지 않음

방통위는 이 사건 차단수단 설치의무 조항이 부모에게 차단수단을 유지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아서 부모의 교육권을 제한하지 않는다 고 주장합니다.

마.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지 않음

방통위는 설령 이 사건 차단수단 설치의무 조항에 의해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제한되더라도 이 사건 차단수단 설치의무 조항을 통해 청소년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으므로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며, 사업자는 차단수단을 삭제하지 못하도록 감시할 권한이 없고 법정대리인에게 통지만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침해 최소성의 원칙에 부합하며,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이 월등하므로 법의 균형성도 위반하지 않아 과잉금지원칙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3. 포괄위임금지 원칙 및 위임입법 한계를 위반하지 않음

방통위는 이 사건 차단수단 설치의무 조항의 법률조항이 그 위임의 범위가 구체적이고 명확하여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으며, 시행령 조항은 수권법률의 위임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여지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II. 방송통신위원회 주장의 부당성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요건

가. 자기관련성 흡결 주장의 부당성

방통위는 청구인들에게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1) 이 사건 차단수단 설치의무 조항의 입법목적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이동통신 사업자(이하 “이동통신사”라 합니다)의 영업의 자유를 일정 부분

제한하는 규정이지 청소년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함이 아니며, 2) 실질적인 규율대상이 이동통신사이며, 3) 청구인들에게 미치는 효과가 이동통신사에게 미치는 효과만큼 이르지 못하며, 4) 이동통신사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옳지 않습니다.

먼저 방통위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이동통신사의 영업의 자유를 일정 부분 제한하는 규정이라는 점에서 청소년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입법”이 아니라고 하나 이는 직접적인 수범자와 입법목적을 혼동한데서 온 오류입니다. 본 법의 목적은 이동통신사의 자유권 제한이 아니라 방통위도 인정하듯이 “청소년의 보호”, 즉 스마트폰 등을 통하여 유통되는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음란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것은 매우 명백합니다. 또한 실질적인 규율대상도 스마트폰에 차단수단이 설치됨으로 인해 콘텐츠 접근을 자유로이 할 수 없는 청소년인 것이지 차단수단을 설치하는 이동통신사가 아니며, 이동통신사는 단순한 매개체로 국가가 청소년을 간접적으로 규율할 수 있게 할 뿐입니다.

그리고 “청구인들에게 미치는 효과가 규범의 직접적인 수규자인 이동통신사에게 미치는 효과만큼 이른다고 할 수 없”라고 주장하나 귀 재판소 어느 결정에도 수범자에게 미치는 효과와 제3자에게 미치는 효과를 비교 형량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동통신사에게 어떤 효과를 미치는 이 사건 조항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심대히 제약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만으로 충분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이동통신사가 영업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나, 방통위의 관리·감독을 받는 이동통신사가 방통위 상대로 소송이나 헌법소원을 제기

한 경우는 찾기가 어려우며 또한 이동통신사는 차단수단을 유상으로 판매하기도 하므로 이윤 창출을 도와주는 이 사건 조항들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항 위헌확인 헌법소원에서도 귀 재판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문언상 직접적인 수범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고, 정보제공자인 청구인은 제3자에 해당하나, 사생활이나 명예 등 자기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자로부터 침해사실의 소명과 더불어 그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받으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체 없이 임시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상, 위 임시조치로 청구인이 게재한 정보는 접근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 실질적인 규율대상, 제한이나 금지가 제3자에게 미치는 효과나 진지성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 바 있으며(헌법재판소 2012. 5. 31. 선고 2010헌마88 결정), 이 판시는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하겠습니다.

나. 현재성 흡결 주장의 부당성

방통위는 청구인 2와 3의 경우 추후 스마트폰 이용 계약 체결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우려는 단순히 장래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 또한 부당합니다.

청구인 2는 2003년생, 그리고 청구인 3의 자녀는 2001년생으로 둘 다 10

대인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18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참고자료 11. 2018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 요약 보고서 참조) 우리나라 10대의 인터넷 이용률이 99.9%에 달하며 10대 중 모바일 인터넷 이용자 (일반 이동전화, 스마트폰, 스마트패드 등을 통해 무선인터넷을 이용한 사람)는 98.7%에 달합니다. 이러한 통계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본인 또는 자녀의 스마트폰 계약 체결은 단순히 잠재적인 것이 아니라 현재 그 침해가 분명하게 예측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방통위의 주장과 달리 청구인들에게 현재성이 당연히 인정됩니다.

다. 소 결

위와 같이 청구인들은 자기관련성과 현재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는 방통위의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2. 본안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주장의 부당성

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 여부

(1) 방통위는 이동통신사가 차단수단을 통해 청소년이 어떤 정보를 검색하고 접근하는지 확인할 수 없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제한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헌법 제17조가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은 사생활과 관련된 사사로운 자

신만의 영역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권리로서 국가가 사생활영역을 들여다보는 것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는 기본권이라 할 것이고, ‘사생활의 자유’란 사회공동체의 일반적인 생활규범의 범위 내에서 사생활을 자유롭게 형성해 나가고 그 설계 및 내용에 대해서 외부로부터의 간섭을 받지 아니할 권리로서 국가가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을 방해하거나 금지하는 것에 대한 보호를 의미합니다(현재 2001. 8. 30. 99헌바92 참조).

즉, 사생활의 비밀은 국가가 사생활영역을 들여다보는 것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는 기본권이며, 사생활의 자유는 국가가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을 방해하거나 금지하는 것에 대한 보호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보호하는 것은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을 유지할 권리, 개인이 자신의 사생활의 불가침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개인의 양심영역이나 성적 영역과 같은 내밀한 영역에 대한 보호, 인격적인 감정세계의 존중의 권리와 정신적인 내면생활이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 등입니다(현재 2003. 10. 30. 2002헌마518 참조)

따라서 청소년이 유해정보 사이트를 포함하여 웹사이트에 접속하는 행위는 정보에 접근하여 수집하고 어떻게 활용할지에 관한 정신적인 내면생활의 영역으로서 당연히 청소년 자신의 고유한 사생활 영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방통위는 이동통신사가 직접 청소년이 검색한 정보 등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이 유해정보 사이트에 접속하는 경우 해당 접속 사이트와 청소년 유해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매칭함으로써 차단수단 서버 단계에서

자동적·기계적으로 필터링되는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유해정보 사이트에 접속할 때만 차단수단 서버로 정보가 가는 것이 아니며 청소년이 접속하는 모든 웹사이트의 정보가 차단수단 서버에 전달되어야 전달된 정보 중에서 차단수단 서버의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유해정보 사이트와 일치하는 웹사이트 정보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이 스마트폰에서 인터넷에 접속하는 순간부터 모든 정보가 차단수단 서버로 보내지게 됩니다. 이렇게 이동통신사가 차단수단 서버로 보내지는 정보를 실제로는 직접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관념적으로 볼 때는 당연히 해당 정보를 직접 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따라서 청소년의 사생활에 대한 제한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자동적·기계적인 방식이란 것은 사생활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데 고려요소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구글이 이메일 내용에 맞추어 타겟 광고를 하는 것도 자동적·기계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사생활 침해라는 비판을 받았고 결국 구글은 지메일 타겟 광고를 종료해야 했습니다(참고자료 12. 2017. 6. 26.자 조선비즈 기사 참조). 그리고 적어도 구글은 타겟 광고에 대해 지메일 이용약관으로 동의를 받았지만, 이동통신사들은 청소년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 사건 조항에 의해 일방적으로 사생활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더 문제라 할 것입니다.

게다가 차단수단 설치 여부 확인은 사생활 침해가 아니며 작동 여부만을 기계적·자동적으로 감지하므로 사생활 침해가 아니라는 주장도 이유 없습니다. 청소년이 어떤 웹사이트에 접속하고 어떤 정보를 검색하고 접근하는지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스마트폰에 차단수단이 설치되었는지, 그 차

단수단이 작동하는지 여부는 청소년의 사생활 영역에 포함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나만이 사용하고 심지어 비밀번호 설정 등으로 타인의 접근을 막고 사용하는 스마트폰에 어떤 앱을 설치했으며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는 나의 내밀한 영역에 해당하는 사안이며 제3자가 동의 없이 들여다볼 수 있는 공적인 영역에 해당하는 사안이 아니라는 사실은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2) 방통위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따라 법정대리인에게 ‘차단수단의 작동 여부’에 관하여 통지하는 것도 청소년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나 이 주장도 타당하지 않습니다.

방통위는 “스마트폰에 설치된 차단수단의 작동 여부에 관한 정보”는 개인의 내밀한 내용이나 양심 또는 성적 영역도 아니고 감정세계나 정신적인 내면생활과도 관련이 없으므로 사생활 영역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스마트폰에 설치된 차단수단의 작동 여부에 관한 정보도 유해정보 사이트를 포함하여 웹사이트에 접속하는 행위와 마찬가지로 정신적인 내면생활의 영역으로서 당연히 청소년 자신의 고유한 사생활 영역에 해당합니다. 내 스마트폰에 어떤 앱이 깔려있는지, 내가 어떤 앱을 사용하고 있는지에 관한 정보는, 내가 인터넷 상의 어떤 정보에 접근해서 수집 및 활용하는지를 유추해 낼 수 있는 정보로서 타인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보호하는 사생활이란 내용에 상관없이 누가 보아도 당사자가 사생활로서 보호하려는 노력을 해온 정보에는 적용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일기장에 오늘 날씨에 대해서 비가 내렸

고 기온은 14도였다는 무미건조한 내용을 썼다고 하더라도 타인이 그 일기장을 읽는 것은 사생활 침해가 됩니다. 아무리 평이한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일기장이라는 공간은 내 내밀한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은 법정대리인과는 법적으로 독립된 독자적인 기본권 주체입니다. 아무리 법정대리인에 대한 통지라고 하더라도, 청소년의 입장에서는 법정대리인과의 관계에서도 알리고 싶지 않거나 간접받고 싶지 않은 사항이나 영역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따라 법정대리인에게 ‘차단수단의 작동 여부’에 관하여 통지하는 것도 청소년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3) 마지막으로 방통위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별도로 그 침해 여부를 판단할 실익이 없다고 하지만 이는 부당합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별도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별도로 논증하는 이유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내밀한 영역에 속하지 않는 정보도 모두 보호대상으로 보지만 웹서핑기록은 그 자체가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private) 정보이기 때문에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외에도 별도의 사생활의 침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영어로는 프라이버시권(right to privacy)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상위 개념이며,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별도로 보호할 법익이 있습니다. 예컨대 헌법재판소는 상습적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는

피부착자의 위치와 이동경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피부착자를 24시간 감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피부착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하며, 피부착자의 위치와 이동경로 등 ‘위치 정보’를 수집, 보관,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도 제한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 2012. 12. 27. 2011헌바89 참조).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청소년이 유해정보 사이트를 포함하여 웹사이트에 접속하는 행위는 정보에 접근하여 수집하고 어떻게 활용할지에 관한 정신적인 내면생활의 영역으로서 청소년의 사생활 영역에 해당하고, 또한 스마트폰에 설치된 차단수단의 작동 여부에 관한 정보도 정신적인 내면생활의 영역으로서 청소년의 사생활 영역에 해당하므로, 청소년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분명히 제한하고 있고, 따라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별개로 그 침해 여부를 판단할 실익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

방통위는 1) 스마트폰의 이용 계약 체결시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이 사건 차단수단 제공의무 조항과 관련이 없고, 2) 이 사건 차단수단 설치의무 조항으로 인해 이동통신사나 앱 개발사가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 정보를 수집, 보관하며 이를 활용할 수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하나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이동통신사가 청소년과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청소년과 법정대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보관하고, 청소년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접속정보, 위치정보, IP 주소, 로

그기록 등 스마트폰 사용정보를 수집·보관하고 있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다만 차단 앱 제공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최소한의 정보에 국한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시로 든 차단 앱은 이동통신사 3사의 무료 서비스 앱일뿐 다른 개발사의 앱이나 유료 앱들의 예는 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견서 각주 2)에서 앱 개발사 중 일부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직접적으로 수집하고 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2016년 10월 달 기준 방통위가 직접 운영하는 정보포털 와이즈유저에 따르면 차단 앱은 19종에 달했으며 그 중 일부는 자녀가 누구랑 연락하는지, 어떤 정보에 접근했는지 등 사용 내역을 부모에게 제공하기도 했습니다(참고자료 13. 2016. 10. 13.자 한국일보 기사 참조). 또한 2014년도 한국HCI(Human Computer Interaction)학회 연구 결과에 의하면 차단수단으로 제공되는 소위 “스마트폰 중독 방지 어플리케이션” 27개 대부분이 유해콘텐츠 차단을 넘어 스마트폰의 전체 혹은 일부 기능에 대한 사용 자체를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 9개는 부모가 자녀의 스마트폰을 직접 제어할 수 있었습니다.¹⁾

최근 자료에 의하면 가장 많이 쓰이는 차단 앱은 구글 패밀리링크, 모바일 펜스, 스크린타임, 쿠키즈 등이 있는데, 이들 앱은 웹사이트나 앱 차단뿐만 아니라 통화·문자 기록 실시간 모니터링, 스마트폰 사용시간 제한, 위치추적, 와이파이 차단, 카톡 차단 등 청소년의 스마트폰 기능 대부분을 부모가 통제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경험담과 앱에 대한 소위 ‘별점 테러’를 보면 이들 차단앱에 대한 청소년들의 불만이 극에 달한 상황입니다(참고자료 15. - 19. 관련 기사 참조).

1) 참고자료 14. 고민삼, 이준원, 양수빈, 이의진, “스마트폰 과도사용 중재 모바일 앱 분석: 중재 방 법 관점”, 한국HCI학회 학술대회 2014. 2.

차단 앱이 이런 정보를 부모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동통신사가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개인정보 외에 청소년과 법정대리인의 관계를 포함한 더 많은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렇게 수집하는 개인정보들이 차단 앱과 관련이 없다는 주장은 상식에 반합니다.

또한 이동통신사가 수집·보관하는 개인정보를 활용하지 않는다는 방통위의 주장도 근거가 없습니다. 청구서에서 언급한대로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MOIBA)는 ‘사이버안심존’과 ‘스마트안심드림’이라는 차단 앱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러한 앱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청소년의 주 이용정보, 이용시간량, 유해정보 이용현황, 과몰입 현황 등에 대한 통계인 ‘스마트폰 이용행태 통계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버안심존 외에 이동통신사나 앱 개발사가 제공하는 수많은 앱들이 앱 사용으로 얻어진 개인정보를 활용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으며, 특히 자녀폰과 연동되어 부모가 관리하도록 고안된 차단 앱들의 경우 자녀의 스마트폰 이용 행태에 대한 분석 자료를 부모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²⁾

방통위는 ‘사이버안심존’ 앱이나 ‘스마트안심드림’ 앱이 정부에서 무료로 보급하고 있는 사업 내용의 일환으로, 차단수단 설치의무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 조항 어디에도 특정 앱만 깔아야 한다는 조건은 없으며, 시행령을 보면 이동통신사는 청소년 및 법정대리인에게 차단수단의 종류와 내용 등을 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통신사가 설치하는 차단수단의 종류가 무엇인지는 이동통신사에게 달려 있는데 국가 예산으로 개발한 ‘사이버안심존’과 ‘스마트안심드림’을 배

2) 참고자료 20. 이숙정, “스마트폰 중독방지 앱의 자기결정적 동기화 속성에 관한 내용분석 – 자기 결정성 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16. 4.

제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사이버안심존’의 경우 그 구조나 기능면에서 보안 문제로 폐지되었던 ‘스마트보안관’과 명칭만 다를 뿐 동일한 앱입니다(참고자료 5. - 8., 21. 2017. 9. 12.자 오픈넷 논평, 22. 2018. 10. 14.자 디지털데일리 기사 참조).

또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따라 사업자는 차단 앱의 삭제 여부를 파악 해서 법정대리인에게 문자로 고지를 해야 하는데, 청소년과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를 활용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방통위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고 동의 목적 범위 내에서 이용하고 있다고 하지만 청소년은 차단 수단 설치에 대해 동의할 권한이 없으며, 또한 법 문언상 차단수단의 설치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계약 체결을 거부당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방식에 의해 강제된 동의는 진정한 동의라 할 수 없기에 동의 목적 범위 내에서 이용한다는 주장은 부당합니다.

다. 알 권리에 대한 제한

방통위는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불법정보는 청소년의 알 권리의 보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알 권리의 제한은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 또는 불법정보 유통금지제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 사건 차단수단 설치의무 조항과 상관없다고 주장합니다.

먼저 청구인들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이나 불법정보가 청소년의 알 권리의 보호대상이라고 주장한 바 없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제도나 불법정보 유통금지제도가 이 사건 차단수단 설치의무 조항과 상관이 없다는 주장은 이 사건 조항의 근본적 취지가 청소년유해매체물과 음란

정보로부터의 청소년 보호임을 망각한 주장이라 하겠습니다.

청소년유해매체물과 음란정보를 포함한 불법정보는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불법정보의 경우 청소년은 물론이고 성인에 대한 유통도 금지되는 '금지의 대상'이지만,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 대한 유통은 허용되지 않지만 성인에 대한 유통은 허용되는 '관리의 대상'입니다. 따라서 불법콘텐츠에 대한 규제와 청소년유해콘텐츠에 대한 규제는 철저하게 분리되어야 합니다.³⁾ 그런 맥락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은 국가기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가기관에 의한 음란정보 지정제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은 매우 많은 정보에 대해 기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현존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음란정보 데이터베이스는 완전하지 않으며 이에 기반한 차단 기술에 의존하는 현재의 제도 하에서는 합법적인 정보도 차단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청소년의 알 권리를 제한하는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청소년이 안전하게 안심하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가 이 사건 조항과 유사한데, 일본에서도 법 도입 당시 위법하다고 단언할 수 없는 사이트도 삭제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정보에 따라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⁴⁾

따라서 알 권리의 제한은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 또는 불법정보 유통금지제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 사건 차단수단 설치의무 조항과 상관없다는 방통위의 주장은 부당합니다.

3) 참고자료 23. 황성기, “스마트 시대의 콘텐츠 규제 동향과 문제점,” *언론과 법* 제12권 제1호 2013

4) 참고자료 24. 한국법제연구원 외국법제동향

라. 교육권에 대한 제한

방통위는 이 사건 차단수단 설치의무 조항이 부모에게 차단수단을 유지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고, 이동통신사가 실제로 차단수단을 삭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으므로 부모의 교육권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전혀 설득력이 없는 주장입니다.

이 사건 조항의 문언에 의하면 이동통신사가 부모나 청소년의 의사와 관계없이 무조건 차단수단을 제공하게 되어 있어, 어떻게 해석해도 차단수단 설치 여부가 이동통신사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볼 여지가 없습니다. 또한 차단수단 설치 이후에 이동통신사가 차단수단을 삭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 이는 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시행령 조항에 따르면 이동통신사는 차단수단이 삭제되지 않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해서 부모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는데, 이는 이동통신사에게 차단수단 삭제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법 문언상 설치의무 및 삭제방지의무가 있는 이상 현실에서 삭제 조치를 하고 있다는 주장은 오히려 이 사건 차단수단 제공의무 조항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보여줄 뿐입니다.

게다가 방통위는 2016년 12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동 법안에서는 아래와 같이 법정대리인이 서면으로 차단수단 이용 거부 신청을 할 수 있게 하는 제32조의7제1항 단서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참고자료 25. 2004135 의안과 의안원문 참조). 방통위가 이런 개정안을 제출했다는 것은 스스로 이 사건 차단수단 설치의무 조항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자인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현 행	개 정 안
<p>제32조의7(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의 차단) ①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과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음란정보에 대한 차단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p> <p>② (생략)</p> <p>③ 제1항에 따른 차단수단 <u>제공 방법</u> 및 <u>절차</u>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32조의7(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의 차단) ① ----- ----- ----- ----- ----- ----- ----- ----- ----- ----- ----- ----- ----- ----- ----- 음란정보(이하 이 조에서 “유해·음란정보”라 한다)--. 다만, 해당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이 서면으로 차단수단을 이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공하지 아니하게 되 해당 청소년이 유해·음란정보에 노출될 수 있음을 법정대리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제1항에 따른 차단수단 <u>제공 방법</u>, <u>절차</u> 및 <u>제1항 단서에 따른 신청</u>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도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차단수단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는 것은, 피규제자에게 선택권을 제공하여 현행법

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다”고 보아 현행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참고자료 26. 검토보고서 참조).

다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일본의 경우 유사한 차단수단을 의무화하면서 보호자가 차단수단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위에서 언급한 「청소년이 안전하게 안심하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 차단수단 설치의무 조항과 해당 법률은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일본에는 그동안 인터넷상 청소년유해매체물 규제가 없었고, 동 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수단은 우리나라처럼 차단 앱의 설치가 아닌 네트워크 필터링 서비스의 제공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강력한 청소년유해매체물 규제가 존재하고 사업자들은 이미 네트워크 필터링을 의무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필터링과 차단 앱 설치는 매우 큰 차이점이 있는데, 네트워크 필터링은 인터넷 사용시에만 작동하지만 차단 앱의 경우 위에서 보았듯이 청소년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다양한 추가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또한 스마트폰 사용 정보를 수집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가능성이 더욱 높습니다.

또한 일본법은 청소년의 주체성을 인정하고 인터넷 리터러시의 습득과 청소년 보호간의 균형 및 민간에 의한 자율적 대응을 기본이념으로 하나, 우리 법은 이러한 고려가 없이 사업자를 통해 일방적으로 국가후견적인 제도를 강제하여 우리나라 기존 청소년보호정책 전반의 문제점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사업자에 대한 직접적인 제제 및

처벌은 배제하고 있으며 관련 정책의 초점은 국가, 사업자, 보호자 등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환경 정비를 위한 도구 적용 및 교육 홍보에 맞춰져 있다고 합니다.⁵⁾

오픈넷에서 2016년 12월 29일부터 2017년 1월 8일까지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SNS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보면, 청소년스마트폰 감시 앱 강제 설치에는 부모와 청소년 모두 통틀어 90%가 부정적으로 답변했으며, 청소년스마트폰 감시법은 폐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습니다. 또한 부모들이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에 있어 가장 우려하는 점은 스마트폰 중독이며, 그 다음이 유해정보 접속으로 나타났습니다(참고자료 28. 2017. 2. 2.자 오픈넷 논평 참조). 또한 이 사건 조항에 대한 최초의 심층연구인 『청소년 유해매체물 차단수단 의무설치 정책의 사회문화적 영향 연구』에 의하면 “대부분의 부모들은 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수단 의무설치보다는 선택적 설치가 더 바람직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실제로 부모의 차단수단 이용형태가 ‘자율모니터링형’인 가정의 자녀에게서 차단수단을 회피하려는 시도나 차단수단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덜 나타났다고 합니다.⁶⁾

전문가들도 입을 모아 차단 앱 강제설치와 같은 강제적 방식은 스마트폰 청소년 훈육에 전혀 효과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김영심 충실사이버대 아동학과 교수는 “아이도 하나의 인격체로 인권과 사생활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하며 “오해가 생기지 않게 끊임없이 대화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수반돼야 한다”고 하고(참고자료 15. 조선일보 기사 참조), 놀이미디어교

5) 참고자료 27. 송은지, 민경식, 최광희, “청소년 보호 관련 인터넷 규제 개선방향에 대한 제언”, 한국인터넷진흥원 Internet & Security Focus 2013 6월호

6) 참고자료 29. 조민지, “청소년 유해매체물 차단수단 의무설치 정책의 사회문화적 영향 연구”, 정책 학석사 학위논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 정책전문대학원, 2017. 2.

육센터 권장희 소장은 부모 주도의 통제는 결국 효과가 없고 “일차적으로 필요한 건 서로 소통해서 스마트폰 이용에 관한 합의를 이뤄내는 것”이라고 하면서, 부모가 자녀와 탄탄한 관계를 형성하는 게 자녀의 스마트폰과 의존을 줄이는 중요 요인이라고 합니다(참고자료 18. 세계일보 기사 참조).

결론적으로 이 사건 조항과 같은 국가적 개입은 부모의 자녀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교육의 기회를 빼앗을 뿐만 아니라 충분한 논의와 이해 없이 일방적으로 강요된 감시로 인해 청소년의 반발심과 일탈을 불러일으켜 가족생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실제로 미치고 있는 점이 확인됩니다(참고자료 15. - 19. 관련 기사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이 부모의 교육권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마. 과잉금지원칙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의 부당성

(1) 수단의 적합성

방통위는 이 사건 조항은 사후 삭제를 가능하게 하고 있고 유해매체물 차단 외에 제공되는 서비스는 부가서비스로서 이 사건 조항에 의해 강제되는 서비스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앞서 보았듯이 법 문언을 어떻게 해석해도 사후 삭제를 허용한다고 읽힐 수 없고, 현재 제공되고 있는 차단 앱들 중에 유해매체물 차단만 제공하는 앱들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타당하지 않은 주장이라 하겠습니다.

불법·유해 콘텐츠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해야 하는 것은 마땅하나, 단순한 유해매체물 차단뿐만 아니라 실시간 모니터링, 스마트폰 사용시간 제한,

위치추적, 와이파이 차단, 카톡 차단 등의 원격 관리 기능을 포함한 다양한 추가적 기능을 제공하여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는 차단 앱의 강제 설치라는 수단은 입법 목적 달성에 전혀 적합한 수단이 아닙니다.

『스마트폰 중독방지 앱의 자기결정적 동기화 속성에 관한 내용분석 연구』에 따르면 현재 유통되고 있는 이러한 차단 앱들은 청소년 이용자의 자기조절을 내재화시키지 못할 뿐 아니라 지나친 통제성으로 인해 오히려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미디어 이용이 점점 개인화됨에 따라, 자녀의 미디어 이용에 관한 부모 중재는 미디어 이용과 관련된 가치 및 규범을 내재화하고 자기결정적 조절 동기를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유해물차단이나 중독방지를 위한 부모관리형 앱들은 정부나 통신사에 의해 주도적으로 개발되어 왔는데, 이러한 앱들은 지나친 통제성과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속성의 부족으로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을 중재하는 데 효과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차단 앱은 부모의 일방적인 통제 수단이 아니라 자녀의 자율성을 보조하는 수단이 되어야 하며, 자녀의 일상을 감시하는 수단이 아니라 자녀의 유능성과 관계성 욕구를 지지하면서 그들의 자율적 조절을 도와주는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합니다.⁷⁾

또한 앞서 언급한 『청소년 유해매체물 차단수단 의무설치 정책의 사회문화적 영향 연구』에 의하면 부모는 차단 앱으로 인해 자녀가 시간관념을 갖게 되고, 스마트폰 과몰입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으며, 위치확인과 같은 자녀의 신분안전 얻을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긍정적이라 평가한 반면, 자녀의 경우 자신의 SNS나 문자메시지 자동검열로 인한 사

7) 참고자료 20. 이숙정, “스마트폰 중독방지 앱의 자기결정적 동기화 속성에 관한 내용분석 – 자기 결정성 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16. 4.

생활 감시, 시간제한으로 인한 자기결정권 침해 등을 주요 부정적 요인으로 평가하였다고 합니다. 특히, 차단 수단이 없는 또래 친구들과 비교해 자신을 불쌍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반발심으로 인해 우회 수단을 적극적으로 찾아보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는 차단 수단 의무설치 정책이 오히려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반발심 같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차단 앱 설치로 인해 가정 내 갈등현상과 부모의 스마트폰 종속 현상이 나타나, 차단 앱 자체가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새로운 갈등을 유발시키는 원인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의 경우 차단 앱을 빈번하게 사용하게 되면서 전보다 자녀의 걱정이나 감시가 심해지고 있음을 스스로 느끼고 있어 또 다른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⁸⁾

그리고 ‘스마트보안관’의 보안 문제에 대해서도 방통위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보안성 평가를 통해 재차 미비점 보완을 완료한 바 있다고 하지만, 방통위는 2015년 11월 1일 별 다른 이유 없이 서비스를 중단했다가(참고자료 30. 2015. 11. 3.자 오픈넷 논평 참조), ‘사이버안심존’으로 이름만 바꿔서 다시 제공해왔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오픈넷은 시티즌랩 연구소와 함께 사이버안심존이 스마트보안관이 가지고 있던 보안 취약점을 거의 그대로 가지고 있음을 밝혀냈습니다(참고자료 21., 22. 참조). 이후에는 이동통신사가 ‘스마트보안관’ 대신 제공하고 있는 무료 앱들인 ‘KT 자녀폰 안심’과 ‘U+ 자녀폰 지킴이’에 대해서도 보안감사를 실시했는데, 역시나 다수의 보안 취약점들이 발견되었습니다(참고자료 31. 2017. 11. 29.자 오픈넷 논평, 32. 2017. 11. 29.자 이데일리 기사 참조).

8) 참고자료 29. 조민지, “청소년 유해매체물 차단수단 의무설치 정책의 사회문화적 영향 연구”, 정책학석사 학위논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 정책전문대학원, 2017. 2.

그리고 『청소년 유해매체물 차단수단 의무설치 효과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청소년 유해매체물 차단수단의 전반적인 품질 개선이 필요한데,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결과를 보면 자녀의 게시글에서 나타난 차단수단 회피 방법은 삭제, 공장초기화, 루팅, 우회, 무력화 등 다양한 키워드가 검출되었고, 부모로부터 차단수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시스템상의 오류와 허점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이미 차단수단 자체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음으로써 정책이 효과적으로 실행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9)

결국 유해매체물 차단이라는 입법 목적은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면서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에 부정적 영향만 미치고 또한 보안 위험에 노출시키는 차단 앱을 강제 설치하도록 하는 이 사건 조항은 수단의 적합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위헌입니다.

(2) 침해의 최소성

방통위는 이동통신사가 차단수단을 삭제하지 못하도록 감시할 권한이 없으면서도, 청소년이 차단수단 삭제시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는 방안은 차단 앱 실효성 확보를 위한 필요최소한의 조치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하나 주장 자체로서 모순됩니다.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이동통신사에게 차단수단 삭제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차단수단이 삭제되었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해야 하므로 감시할 권리가 없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9) 참고자료 33. 조민지, 김기환, 이광석, “청소년 유해매체물 차단수단 의무설치 효과에 대한 연구: 자녀와 부모의 인식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자치행정학보 제31권 제1호(2017 봄)

더불어 방통위는 청소년의 불법·유해정보 노출의 심각성 및 규제의 필요성을 주장하나, 우리나라는 과도할 정도로 청소년 보호 규제가 넘쳐나고 있으며 그 중 다수가 중복적이어서 오히려 실효성을 잃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동통신사들이 네트워크 필터링을 하는 상황에서 차단 앱이 추가적으로 유해매체물을 더 잘 차단한다는 근거도 없습니다. 특히나 기술적 차단의 명확한 기준과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은 것도 문제인데, 차단수단이 검열하려 하고 차단하려는 정보의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실제 유해정보뿐만 아니라 청소년에게 유익한 정보도 차단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음란물을 불법인지 합법인지 가릴 수 있는 차단 기술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무조건 기술적 차단 장치를 통해서 행하는 청소년 규제 방식은 청소년의 알 권리나 정보접근권을 심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¹⁰⁾

차단 앱 의무설치 보다 덜 침해적인 수단은 다양한데, 먼저 자율규제 모델이 있습니다. 자율규제의 정당성과 효율성은 스마트 미디어 시대에서는 더욱더 강조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스마트 미디어 시대에서는 이용자의 정보통제권이 더욱 강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법과 제도를 통해 규제하기 어려운 서비스와 비즈니스 모델이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과 자율규제는 상호 대립되는 관계가 아니고 상호 조화될 수 있는 관계입니다. 부모의 교육권으로 인하여 청소년과 부모와의 관계에 국가가 너무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자율적인 사적 영역으로서의 가족관계의 형성을 국가가 직접 규율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헌법적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이것은 청소년 보호를 위한 청소년유해콘텐츠 규제가 부모의 교육권을

10) 참고자료 33. 조민지, 김기환, 이광석, “청소년 유해매체물 차단수단 의무설치 효과에 대한 연구: 자녀와 부모의 인식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자치행정학보 제31권 제1호(2017 봄)

과도하게 제한하는 방식으로 디자인되거나 이루어져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청소년, 부모, 국가 간의 3면 관계’에서 국가의 후견주의는 가족의 자율성 및 부모의 교육권을 존중하는 것을 전제해야 하며 이를 ‘가족의 자율성 명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정 내에서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에 관한 통제는 부모의 교육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차단 앱 강제설치는 부모의 교육에 관한 권리·의무를 배제한 채 국가가 직접적으로 가정 내에 개입하여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으로, “가족의 자율성 명제”에 정면으로 반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차단수단 설치의무 조항처럼 강압적이고 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제도 대신, 국가는 부모가 자녀의 매체물 이용에 대한 통제권을 효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부모에게 제공해 주는 시스템, 즉 부모에 대한 정보제공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음을 것입니다. 예컨대 사업자가 계약 체결 단계에서 차단수단의 종류, 설치 절차나 방법에 대해서 청소년이나 부모에게 정보를 제공할 것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식입니다. ‘부모에 대한 통지의무’의 방식으로 부모에 대한 정보제공 시스템을 법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가정 내에 국가가 ‘직접’ 개입하는 것을 지양하면서도, 부모의 통제권 행사의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지의무 대상 차단수단의 보안성과 관련해 개인이나 이동통신사는 유인이 없으니 국가가 나서서 청소년 대상 앱들에 대해 보호기준 등을 마련해 보안감사(KISA)를 하고 기준을 통과한 차단 앱을 공지하는 방식의 제도도 덜 침해적인 수단이었을 것입니다.

(3) 법의 균형성

방통위는 청구인들의 법의 균형성 위반 주장에 대해 이 사건 차단수단 설치의무 조항은 청소년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청소년과 부모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부모의 교육권을 제한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달성될 수 있는 공익은 청소년의 보호나 청소년의 올바른 정신적 성장의 사회적 의미를 고려해볼 때 결코 적지 않다고만 주장하고 있을 뿐 유의미한 근거를 대고 반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알 권리의 제한과 관련해서는 이 사건 차단수단 설치의무 조항에 의해 합법적 정보가 차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위험이 잠재적인 것으로 증명된 바 없으며, 스마트폰이 청소년 사이에서 매우 높은 비율로 보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어 이로부터의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이 청소년의 알 권리의 제한보다 훨씬 크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합법적 정보가 이미 차단되고 있는 현실에서 청소년이 어떤 합법적 정보가 차단되고 있는지 알 수 없으므로 청소년의 입장에서 이러한 위험을 증명하는 것은 어려우며, 이러한 위험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은 차단수단 설치를 의무화한 국가에게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일례로 청소년도 구입이 가능한 ‘콘돔’의 경우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에서는 성인인증이 필요한 검색어로 분류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여성가족부 고시에서 ‘요철식 특수콘돔’과 ‘약물주입 콘돔’을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지정했기 때문입니다(참고자료 34. 2017. 5. 21.자 한겨레 기사 참조). 이렇게 청소년들은 본인의 건강과 성적 자기결정권에 매우 중요한 도구인 콘돔에 대한 합법적 정보에 제대로 접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청소

년유해매체물 차단 규제 때문에 청소년의 알 권리가 과도하게 제한되고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겠으며, 차단앱도 청소년유해매체물 데이터베이스에 기반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고스란히 갖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을 유해콘텐츠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국가의 이익은 중대한 공익이므로 그 정당성을 부인할 수 없지만, 청구서에서부터 주장한 바와 같이 국가의 과도한 후견주의에 의해 침해되는 청소년과 부모의 법익이 결코 작지 않으므로 이 사건 차단수단 설치의무 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에 위반됩니다.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차단 앱 강제설치는 수단의 적합성이나 침해의 최소성에서 이미 위헌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바. 포괄위임금지 원칙 위반

방통위는 이 사건 차단수단 설치의무 조항의 법률조항이 그 위임의 범위가 구체적이고 명확하여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으며, 시행령 조항은 수권법률의 위임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 점에 대해서는 청구서에서 충분히 주장했으므로 귀 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바랄 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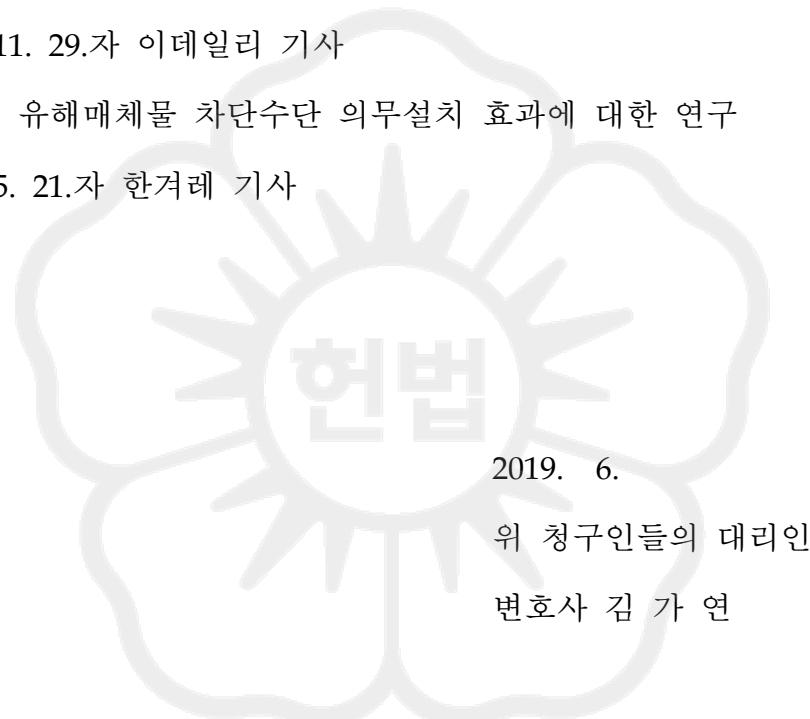
III. 결 론

이상과 같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주장을 이유 없으며 이 사건 차단수단 설치 의무 조항은 청구인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알 권리, 교육권을 침해하고, 포괄위임금지 원칙을 위반하였으므로 위헌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참 고 자 료

11. 2018 인터넷이용실태조사 요약 보고서
12. 2017. 6. 26.자 조선비즈 기사
13. 2016. 10. 13.자 한국일보 기사
14. 스마트폰 과도사용 중재 모바일 앱 분석: 중재 방법 관점
15. 2019. 2. 5.자 조선일보 기사
16. 2019. 2. 19.자 SBS 뉴스 기사
17. 2019. 2. 19.자 미디어스 기사
18. 2019. 3. 10.자 세계일보 기사
19. 2019. 3. 22.자 여성신문 기사
20. 스마트폰 중독방지 앱의 자기결정적 동기화 속성에 관한 내용분석
21. 2017. 9. 12.자 오픈넷 논평
22. 2018. 10. 14.자 디지털데일리 기사
23. 스마트 시대의 콘텐츠 규제의 동향과 문제점
24. 한국법제연구원 외국법제동향

25. 2004135 의사국 의안과 의안 원문
26.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검토보고서
27. 청소년 보호 관련 인터넷 규제 개선방향에 대한 제언
28. 2017. 2. 2.자 오픈넷 논평
29. 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수단 의무설치 정책의 사회문화적 영향 연구
30. 2015. 11. 3.자 오픈넷 논평
31. 2017. 11. 29.자 오픈넷 논평
32. 2017. 11. 29.자 이데일리 기사
33. 청소년 유해매체물 차단수단 의무설치 효과에 대한 연구
34. 2017. 5. 21.자 한겨레 기사



헌법재판소 귀중